

서울특별시 성북구 예방접종 지원 및  
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(양순임 의원 대표발의)

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

#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양순임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522
--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5년 9월 25일

발의자 : 강수진, 경수현, 고영우, 권영애,  
김경이, 김육영, 박영섭, 소형준,  
양순임, 오중균, 이관우, 이용진,  
이인순, 이호건, 임태근, 임현주,  
정기혁, 정병기, 정윤주, 정해숙,  
진선아

## 1. 제안이유

현재 성북구민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 중인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으로 확대하여,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(안 제3조제1항제2호가목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

다. 사전협의 : 건강관리과

라. 입법예고 : 2025. 9. 30. ~ 2025. 10. 4.

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성북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북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65세 이상의 구민

부 칙

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지원 대상)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대상포진: 접종일 현재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</p> <p>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(65세 이상)</p> <p>나. (생 략)</p> <p>3. (생 략)</p> <p>② · ③ (생 략)</p>	<p>제3조(지원 대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----- ----- 가. 65세 이상의 구민 나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